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289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333,333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금액은 13,645,008원과 그 중 원금 9,463,304원에 대한 2021. 12. 22.부터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나. C과 피고의 어머니 D이 사망함에 따라, 망 D의 상속인인 피고와 C 외 1인은 2019. 5. 1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절차(청주지방법원 2018개회3866) 진행 중이었으나 2020. 10. 7. 회생폐지되었다.

라. 2016.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9. 9. 23.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2019. 5. 13. 기준 피담보채무는 24,7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발생일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이하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5. 13. 전에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망 D의 직계비속으로 1/3의 법정상속분을 보유하는 C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기로 한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경 7,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매매잔금 4,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피고는 부동산 구입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넘는 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부모의 의료비로 2015년 4,650,860원, 2016년 29,781,300원, 2017년 23,781,630원, 2018년 9,945,630원, 2019년 3,509,800원(합계 71,669,220원)을 지출한 사실, 한편,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도 위 의료비 중 일부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여기에 반드시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정도의 피고의 기여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C 외 1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위 분할협의에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목 록

[집합건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호

(1 동 건물의 표시)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층아파트 내 동

1 층 330.0 m² 2 층 330.0 m² 3 층 330.0 m² 4 층 330.0 m² 5 층 330.0 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청북도 청주시 대 2133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 1 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0.60 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1330 분의 474

